

「작은 결혼식」 운영을 위한 협약서

(재)서울연구원과 그린웨딩포럼(「시민청 작고 뜻 깊은 결혼식」 협력업체)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개선하고, 큰 의미 담은 작은 결혼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작고 뜻 깊은 결혼식」을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건전 결혼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사항) 이 협약사항은 아래 같다.

- ① 협약사업 : 서울연구원 뒤뜰 「작은 결혼식」 운영
- ② 협약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
- ③ 협약방식 : 업무협력
- ④ 협약내용
 1. “서울연구원”은 운영에 필요한 장소지원 및 일정 협의 후 사용 승인
 2. “그린웨딩포럼”은 예식상담, 진행, 원상복구, 안전사고, 언론 홍보, 경제적 소외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(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소외계층 시민에 대한 무료 결혼식 진행) 등 예식 전반에 대한 책임

제3조(협약의 해지 및 연장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양 기관 합의로 사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
 2. 기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② 위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협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변경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(양도제한 및 해석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간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,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양 기관 간 합의로 결정한다.

제5조(협약의 성립)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에 양 기관의 대표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9월 1일



서울연구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

원장 서왕진



그린웨딩포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

대표 이광렬

「작은 결혼식」 운영을 위한 협약서

그린웨딩포럼(「시민청 작고 뜻 깊은 결혼식」 협력업체)과 (재)서울연구원 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개선하고, 큰 의미 담은 작은 결혼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작고 뜻 깊은 결혼식」을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건전 결혼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사항) 이 협약사항은 아래 같다.

- ① 협약사업 : 서울연구원 뒤뜰 「작은 결혼식」 운영
- ② 협약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
- ③ 협약방식 : 업무협력
- ④ 협약내용
 1. “서울연구원”은 운영에 필요한 장소지원 및 일정 협의 후 사용 승인
 2. “그린웨딩포럼”은 예식상담, 진행, 원상복구, 안전사고, 언론 홍보, 경제적 소외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(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소외계층 시민에 대한 무료 결혼식 진행) 등 예식 전반에 대한 책임

제3조(협약의 해지 및 연장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양 기관 합의로 사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
 2. 기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② 위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협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변경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(양도제한 및 해석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간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,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양 기관 간 합의로 결정한다.

제5조(협약의 성립)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에 양 기관의 대표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9월 1일



그 린 웨 디ング 포 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
대표 이 광 렬



서 울 연 구 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
원 장 서 왕 진
